

<p>제2022-10호 2022년 1월 18일(화)</p>	<p>시  보 여수시</p>	<p>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- 여수시 고시 제2022-24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고시(소라초등 남분교) 1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2-186호 「여수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4
- 여수시 공고 제2022-190호 「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9
- 여수시 공고 제2022-192호 「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
- 여수시 공고 제2022-197호 도로지정(변경) 공고(소라면 덕양리 622-1번지) 20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을 위한 행정예고

여수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(확대)함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,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
2022.1. 17.

여 수 시 장

1. 목적

여수시 관내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에 따른 의견수렴

2. 공고방법 : 여수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eosu.go.kr>)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2.1.17. ~ 2022.2.5. (20일간)

4. 지정위치 : 붙임1 참조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2)를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,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
나.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61-659-5837)

라. 보내실 곳 :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(☎061-659-4143)

바.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위치도 및 사진대지

◆ 위치 : 소라초 남분교 인근(소라면 현천리 601-3번지 일원)



◆ 내용 :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예정 구간



【 붙임 2 】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공 고

「여수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월 17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- 학동 ‘e-편한세상’ 신축구역 내에 두 개의 행정동(쌍봉동, 여천동)이 걸쳐 있어 공동주택 조성구역을 기준으로 쌍봉동, 여천동 경계를 조정
 - 해당지역 : 선원동 1359번지 / ‘e-편한세상’ 단지 내(105~108동 뒤편)
 - ※ 해당지역 거주세대 없음

2. 주요내용

- 행정구역 경계조정(여천동 ↔ 쌍봉동)
 - 선원동 1359번지 → 학동 391번지로 변경

편입 되는 토지				편입 받는 토지			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
선원동	1359	대	2,310	학동	391	대	2,310

※ 선원동 183-5 외 12필지(폐쇄) → 선원동 1359(대) 확정 : '21. 12. 14.

- 면적 변경

변경 전(면적/㎡)		변경 후(면적/㎡)	
여천동	쌍봉동	여천동	쌍봉동
7,529,982	7,169,176	7,527,672 (감 2,310)	7,171,486 (증 2,310)

○ 경계조정 지적도



3. 개정규칙안 : (붙임2) 문서 참고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17. ~ 2022. 2. 6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기타 의견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번호 061-659-5807)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우편주소 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, 여수시청 총무과) (59675)
- 업무담당자 : 총무과 최다윗(cdw2010@korea.kr)
- 문의전화 : 061-659-3106

(붙임 1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규칙명 : 「여수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(붙임 2)

여수시 조례 제 호

여수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여수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쌍봉동 70통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동명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
쌍봉동	2	4	학동 1 e-편한세상 (105동) 101, 102, 103, 201, 202, 203, 301, 302, 303, 401, 402, 403, 501, 502, 503, 601, 602 603, 701, 702, 703 학동 391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〔별표1〕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				〔별표1〕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			
동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	동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
쌍봉동	2	4	학동 1 e-편한세상 (105동) 101, 102, 103, 201, 202, 203, 301, 302, 303, 401, 402, 403, 501, 502, 503, 601, 602 603, 701, 702, 703	쌍봉동	2	4	학동 1 e-편한세상 (105동) 101, 102, 103, 201, 202, 203, 301, 302, 303, 401, 402, 403, 501, 502, 503, 601, 602 603, 701, 702, 703 학동 391

공 고

「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7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 시행)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)
-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-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 : 별첨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17. ~ 2. 6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기타 의견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(번호 061-659-5807)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우편주소 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, 여수시청 총무과) (59675)
- 업무담당자 : 총무과 백기광(gikwang0906@korea.kr)

6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(전화 061-659-3093, 팩스 061-659-580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5조에서 위임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,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직원)

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)

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

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등 규정에 따라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

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

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「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7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격려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선거사무종사자 특별휴가 부여

- 시장은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 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17. ~ 2. 6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

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기타 의견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(번호 061-659-5807)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우편주소 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, 여수시청 총무과) (59675)
- 업무담당자 : 총무과 백기광(gikwang0906@korea.kr)

6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(전화 061-659-3093, 팩스 061-659-580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⑪ 시장은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 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⑨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<u>⑩ 시장은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/u>

도로지정(변경) 공고

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22-1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(변경)·공고합니다.

1. 도로지정 공고 내역

구분	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당초	소라면 덕양리	622-1	10	-	17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변경	소라면 덕양리	622-1	10	-	16		

※ 도로지정공고(당초) : 제2021-2479호(2021. 9. 8.)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(061-659-4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2. 1. .

여 수 시 장